

# 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80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6. 1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### 1. 제안이유

- 제명 띄어쓰기 및 지방자치법 인용조문을 수정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 법에 합치하는 군정을 구현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#### ○ 조례안 제1조

-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

#### ○ 부칙

- 제명 띄어쓰기에 따른 다른 조례의 인용제명 수정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 제22조, 제104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(2015. 09. 23. ~ 2015. 10. 13.) 결과 : 제출의견 없음.

2) 규제심사, 부패영향평가, 성별영향분석평가 : 원안 동의

## 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”를 “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제95조”를 “제104조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평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4조제3항 중 “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”를 “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② 평창군 이효석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4조 중 “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”를 “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③ 평창군 작은도서관 설치·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제3항 중 “「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”를 “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④ 평창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「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”를 “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제26조 중 “「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”를 “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⑤ 평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「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”를 “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⑥ 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·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0조제1항 중 “「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”를 “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⑦ 평창군 헴프전시체험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「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”를 “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⑧ 평창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2조제1항 단서 중 “「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”를

“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⑨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제3항 후단 중 “「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”를 “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⑩ 평창군 효석문학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5조제1항 단서 중 “「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”를 “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제24조 중 “「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”를 “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⑪ 평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2조제2항 중 “「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”를 “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⑫ 평창군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4조 중 “「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”를 “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

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

- 비용발생 요인 없음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.

## 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없음.

## 4. 작성자

작성 자	자치행정과장 남 동 선
연 락 처	(033)330-2210